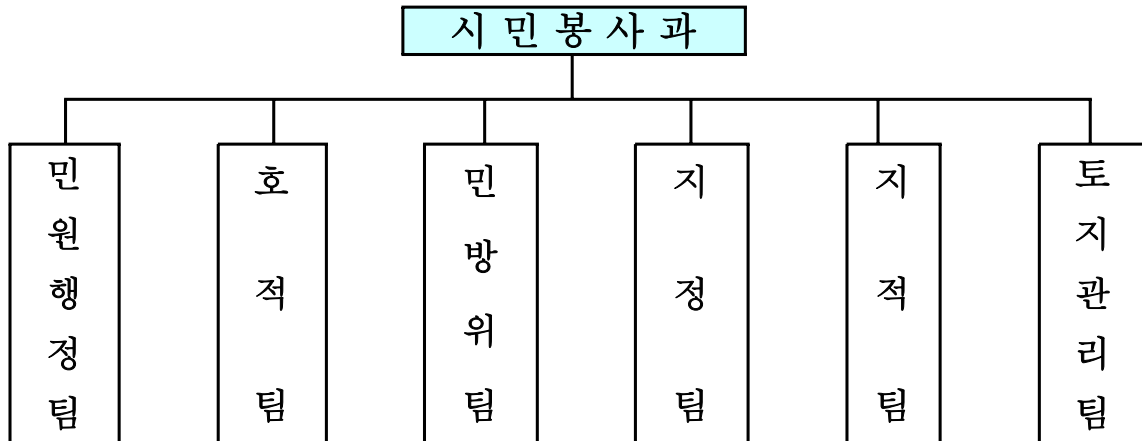


(시민봉사과)

일반현황

(2005. 1. 1일 현재)

□ 기 구



□ 인 원

(정원/현원)

구 분	계	행.지	행 정					지 적			기 계	
		5급	6급	7급	8급	9급	6급	7급	8급	9급	7급	8급
계	27/27	1/1	3/3	2/4	6/9	5/0	3/3	1/4	5/2	0/0	0/1	1/0
민원행정팀	6/6	1/1	1/1	1/1	1/3	2/0						
호 적 팀	5/5		1/1	1/1	2/3	1/0						
민방위팀	3/3		1/1	0/1	1/0						0/1	1/0
지 정 팀	4/4				0/1	1/0	1/1	0/1	2/1			
지 적 팀	3/3						1/1	1/2	1/0			
토지관리팀	6/6			0/1	2/2	1/0	1/1	0/1	2/1			

토지등록

(단위 : 필지수, m²)

계		국유지		민유지	
필지수	면적	필지수	면적	필지수	면적
26,173	20,581,327	683	523,880	25,490	20,057,447

지적(임야)대장

(단위 : 장, 권, 호수, 지번수)

총계	부채식대장				카드식대장					토지(임야)전산화일			
	소계	토지	임야	공유지연명부	소계	토지	임야	공유지연명부	집합건물	소계	토지	임야	집합건물
207,559	461	121	4	336	67,261	38,616	1,102	12,085	15,458	139,837	25,724	449	113,664

지적(임야)도면

(단위 : 매)

계	폐쇄지적(임야)도					일람도	색인도	경계점좌표등록부
	소계	1:500	1:600	1:1200	1:6000			
12,177	1,038	556	172	296	14	26	29	11,084

지적측량기준점 관리

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근점
1,666	5	16	1,645

부동산중개업소

(단위 : 개소)

계	공인중개사	중개인	기타(법인)
1,029	823	199	7

신속·정확한 토지정보자료 제공

지적정보자료의 신속·정확한 관리로 토지정책 입안 기초자료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
□ 사업개요

- 실시간 토지대장 소유자변동자료 관리
- 소유자변동자료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대상자 발취

□ 추진계획

- 실시간 토지소유자 변동자료 정리
 - 법원내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
 - ▶처리기간 단축 : 현행 7~10일 소유 ⇒ 약 12시간 소요
 - ▶전산과 수작업 병행 처리
- 소유자 변동자료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자 발취
 -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체결(잔금 완납일)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자 :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과
 -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 :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

□ 기대효과

- 토지정보자료의 기초인 토지대장의 신속·정확한 관리로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 감소
- 부동산의 정확한 등록공시로 시민의 소유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

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

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 하여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및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의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한시법으로 시행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토록 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신뢰 받는 지적행정 구현

□ 사업개요

- 시행기간 : 2004. 4. 1~2006. 12. 31 (2년 9월)
- 대상토지 :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인 그 지상에 건물 (무허가 건물포함)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

□ 추진계획

- 주민홍보(안내문, 유선방송, 지역신문) : 2005. 1. 1~1. 20
- 토지대장 활용 공유토지 조서작성 : 2005. 1. 21~ 2. 28
- 공유토지 건축물대장, GB대장 열람 : 2005. 3. 1~ 3. 31
- 대상토지, 건물 등기부 열람 : 2005. 4. 1~ 4. 15
- 공유토지분할 신청안내 : 2005. 5. 1~ 5. 15
- 접수 및 분할측량 : 2005. 5. 16~ 8. 31
- 청산금산정 및 청산 : 2005. 9. 1~10. 31
- 지적공부 결의 및 등기촉탁 : 2005. 11. 1~12. 31

□ 기대효과

-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토지분할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
- 개별법으로 공유토지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시행기간 내 대상 토지 분할 정리하여 소유자 편의 제공

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

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
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·결정

□ 사업개요

- 조사대상 필지 : 25,366필지 (2004년 기준)
-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
-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
- 검증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

□ 추진계획

- 2005. 1.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(전수조사)
 - 토지특성 조사 : 2005. 1. 3~2. 28
 - 지가 산정 : 2005. 3. 1~3. 26
 - 산정지가 검증 : 2005. 3. 27~4. 20
 -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: 2005. 4. 21~5. 10
 - 지가 결정·공시 : 2005. 5. 31
 - 이의 신청 (30일간) : 2005. 6. 1~6. 30
- 2005. 7.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(수시분)
 - 토지특성조사 : 2005. 7. 1~8. 13
 -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: 2005. 9. 12~10. 4
 - 지가 결정·공시 : 2005. 10. 31
 - 이의 신청 (30일간) : 2005. 11. 1~11. 30

□ 기대효과

-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
- 합리적인 지가수준의 공시로 토지시장의 적정한 가격형성 유도

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

목적지를 누구나 쉽게 찾기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·유지보수 및 전산시스템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인터넷 웹 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국가경쟁력 제고

□ 사업개요

- 건물번호 부여 전산시스템 유지·관리
- 건물번호판 신규 부착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
- 신축건물, 멸실 건물, 도로개설, 지적분할·합병등 변동자료 입력
- 법률로 정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정부의 중·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

□ 추진계획

-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유지관리
 - 건물번호판 : 29,651건
 - 도로명판 : 1,274건
- 건물번호판 신규부착 (일반, 집합, 신축건축물) : 500건
- 도로명판 유지 보수 : 10건
- 건물신축, 멸실, 도로개설, 지적분할·합병등 변동내용 전산자료 정비
- 수시 변동분 및 유실분에 대한 보수 및 신규부착 병행 추진
- 각종 공문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병행 표기 홍보
- 공공기관 및 우편물 다량 발송 기업체 적용 홍보

□ 기대효과

-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로 방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시민생활불편 최소화

【특수시책】 『조상 땅 찾아주기』 민원 서비스 운영

토지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불의의 재난 등으로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속인 또는 본인에게 지적정보센터의 전산망을 통한 토지 소유현황 조회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전국 토지소유현황 조회 제공
 - 상속자에 대한 조상 땅 소유현황 조회
 -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확대시행

□ 추진계획

- 『조상 땅 찾아주기』 민원 서비스 운영 : 연중
 - 주민등록부여자 : 지적정보센터 내 토지 소유현황 조회
 -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
 - ▶ 신청서 접수 ⇒ 경기도청(전화송신) ⇒ 팩스민원 처리

※ 그간 추진실적('02~'04) : 126건 298필지 (47건 無재산)

-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에 대한 조회지역 전국 확대(자체시행)
 - 현행 : 타시도의 토지 조회시 해당 시군구로 직접 방문 신청
 - 개선 : 해당 시도에 전화 송신하여 확인 검토 후 조회결과 회신
-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확대시행 건의
-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실시 : 분기별 1회

□ 기대효과

-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·경제적 부담 해소 및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